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2647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264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4. 6 선고 2016가단26672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A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B

변론 종결 2018. 8. 17.

판결 선고 2018. 10. 4.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4. 6. 선고 2016가단26672 판결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50m² 및 D 임야 380m²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ㄱ)부분 지상 주택 62m², 같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가건물 7m²,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장독대 4m²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8, 9, 10, 11, 14, 15, 5, 4, 3, 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토지 부분 110m²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효두

판사정우철

판사이준구

별지